

#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제도



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 
<https://www.3dbank.or.kr>

- 3D프린팅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<https://www.3dbank.or.kr>
- 3D프린팅 안전교육 <http://3d.acastar.co.kr>
- 3D프린팅 안전이용 동영상 <https://youtu.be/mfilhGIncoc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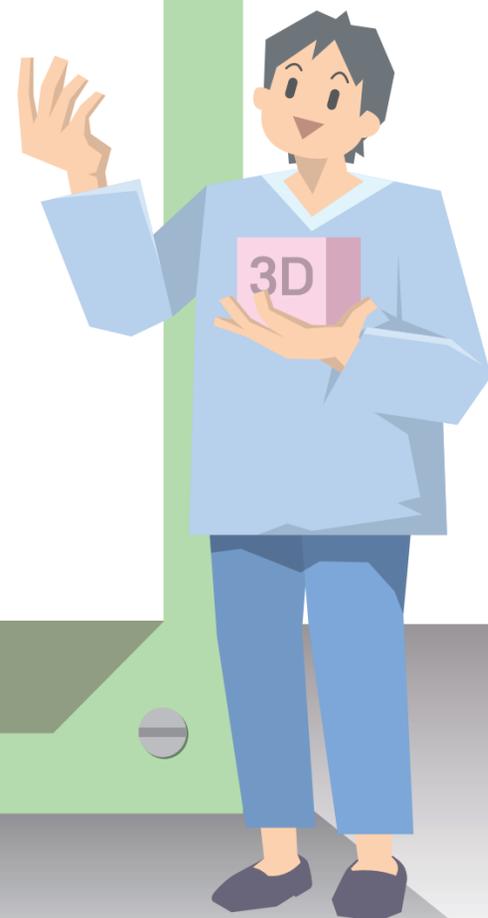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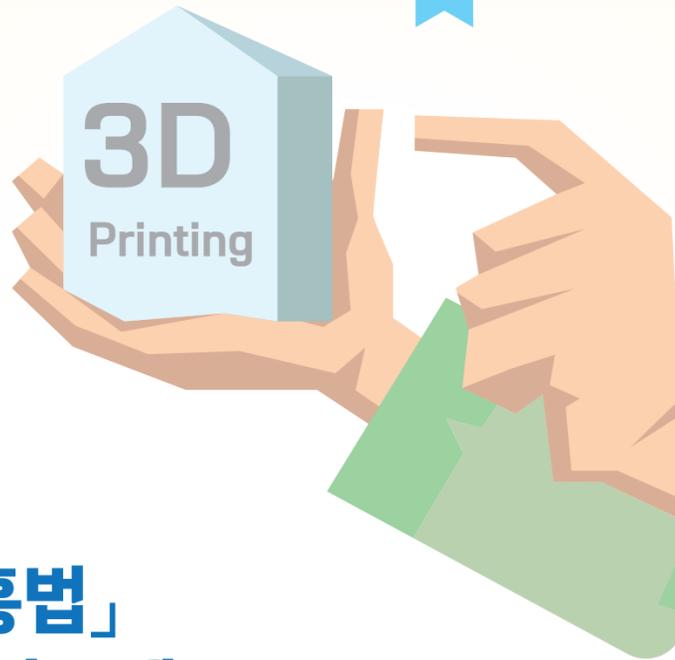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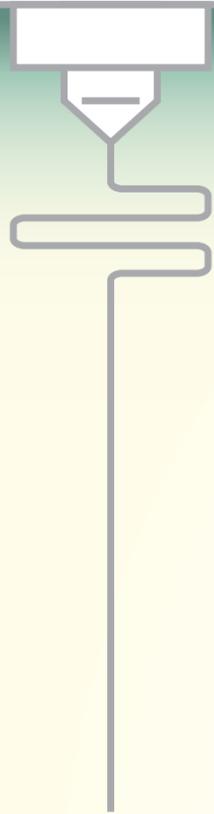
1 **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 
신고는?**

2 **신고는 누가 하나요?**

3 **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**



#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는?



## 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 제15조에 근거한 법정 신고제도로

정부차원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 
관리를 통해 삼차원프린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
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 
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# 신고는 누가 하나요?

## 신고 대상

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(법 제15조)  
출력 대행업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 관련 영리사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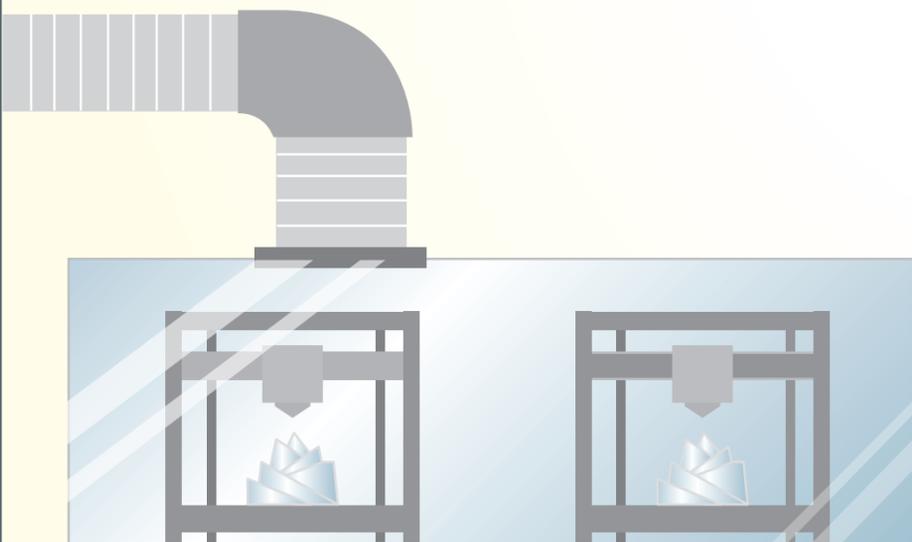
## 면제 대상

위에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 포함  
총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는 제외

## 신고 요건

사업자 포함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고 3D프린팅장비(프린터 등)을  
1대 이상 보유/임차/공동사용(공유)(법 제15조)

※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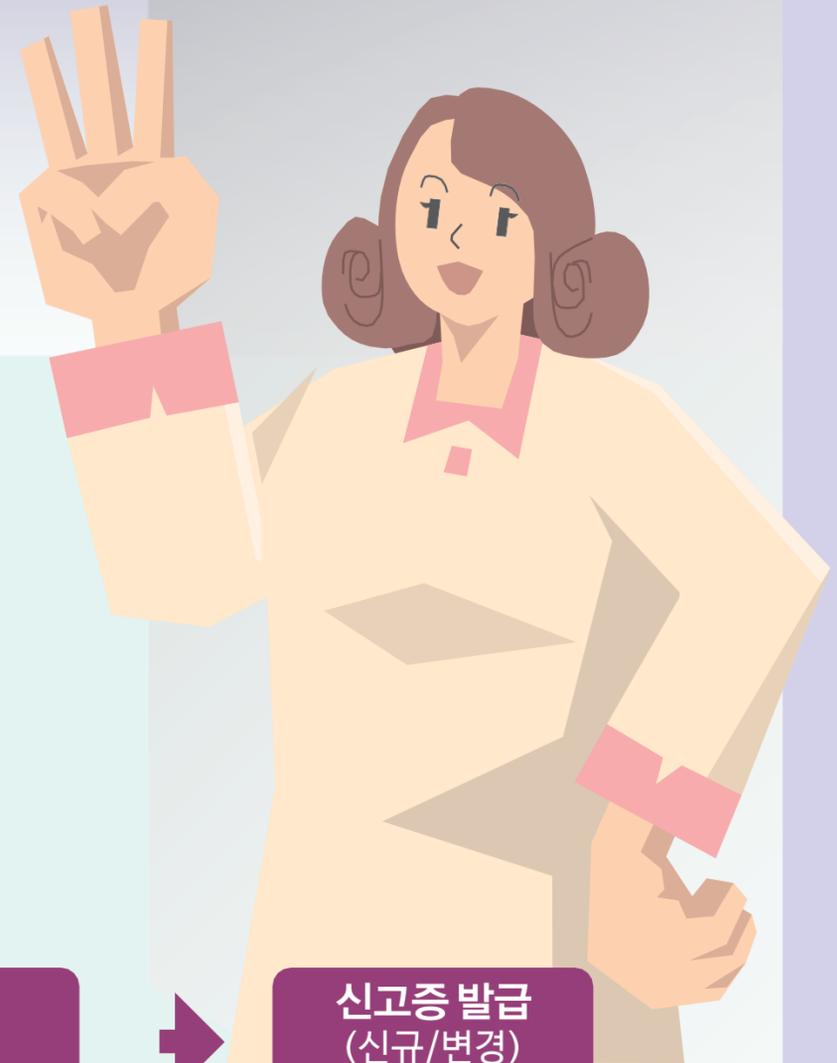
#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## 신고 종류/내용

**신규 신고** | 사업자 상호,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 
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, 근로자 수, 삼차원프린팅 장비 현황,  
기업 규모별 유형 등

**변경 신고** | 대표자명, 사업자 상호,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등

**폐업 신고** | 폐업일, 폐업 사유 등 ※ 기존 신고증 반납



신고서 제출  
(신규/변경/폐업)



3D상상포털([www.3dbank.or.kr](http://www.3dbank.or.kr))  
[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]  
메뉴에서 법인 공동인증서 로  
그인 후신고

신고 검토



신고처리 담당자가 법정  
신고요건 충족여부, 신고  
내용 진위여부 등 확인

신고 수리



3D상상포털 ([www.3dbank.or.kr](http://www.3dbank.or.kr))에서 신고 처리  
현황 확인가능

신고증 발급  
(신규/변경)



3D상상포털 ([www.3dbank.or.kr](http://www.3dbank.or.kr))에서 신고증 온  
라인 발급

※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회원만 온라인 신고(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)

※ 온라인 신고 불가능 시 3D융합산업협회(02-6388-6096)로 문의

※ 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 신고증 발급



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 
신고 관련 문의는  
**3D융합산업협회**  
**(02-6388-6096)**로  
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